

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2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5. 10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- 법제처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자치법규 체계에 부합하도록 조문배열을 재구성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조례안 제2조 및 제3조 변경
 -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앞에 3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규정함이 입법기술상 부합함에 따라 안 제2조와 안 제3조의 순서를 변경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제22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- 1) 입법예고(2015. 09. 23. ~ 2015. 10. 13.) 결과 : 제출의견 없음.
- 2) 규제심사,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 동의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
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제3조 및 제2조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<u>제2조</u>	(구	성)	<u>제2조</u>	(현행 제3조와 같음)
<u>제3조</u>	(기	능)	<u>제3조</u>	(현행 제2조와 같음)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비용발생 요인 없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」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.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없음.

4. 작성자

작 성 자	주민생활지원과장 남 동 선
연 락 처	(033)330-2150